

#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운영규정

개정 2020.01.21. 개정 2021.01.22. 개정 2021.05.06. 개정 2022.04.04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신·편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본교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03.31.><개정 2021.01.29.>

## 제2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03.31.>
- ②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교무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0.01.21., 2022.04.04.>
- ③ 입학전형관리위원은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5.03.31.>
- ④ 간사 1인은 교무팀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5.03.31., 2016.03.31., 2020.01.21., 2021.05.06., 2022.04.04.>

## 제3조 (임무)

입시공정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신·편입학 입시전형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입시 부정 방지 대책 수립<개정 2021.01.22.>
- ② 신·편입학 입시전형 주요과정에 입회<개정 2021.01.22.>
  1. 원서접수
  2. 전산처리 과정
  3. 실기고사
  4. 합격자 사정
  5. 기타 입시부정 방지에 필요한 사항 관리 감독

## 제3조2 (전형 종사위원 등의 회피·제척)

- ① 당해 연도 우리 대학의 입학전형 지원자와 일정관계에 있는 자는 입학전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전형 종사위원 등의 회피·제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2021.05.06.>

## 제4조 (임기)

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운영)

- ① 총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활동을 명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을 통괄하여 본 위원회 임

무를 수행한다.

- ② 위원회의 활동결과 입시전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- ③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## 제6조 (수당)

모든 위원에게 필요한 경우 총장은 위원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7조 (주관부서)

위원회는 교무팀에서 주관한다.<개정 2015.03.31., 2016.03.31., 2020.01.21., 2021.05.06., 2022.04.04.>

#### 부 칙

#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199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# 제2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5.03.31.)

#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6.03.31.)

#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0.01.21.)

#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1.01.22.)

#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21.05.06.)

##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0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 제1호)

## 입시공정위반사항확인서

결 재	간사	위원장	총장

위반사항			
일시		장소	
위반자	소 속	성명	
위반사항 및 조치사항(6차 원칙에 의해 기술할 것)			
상기와 같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기에 보고합니다.			
200 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
작성 자 :			인